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52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9. 5. 8.

발의 의원 : 채명지, 방중영의원

1. 제안이유

공무 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외여행의 필요성, 타당성, 적정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(안 제4조제3항)
 - 3분의 1 → 과반수 이상
-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(안 제6조제1항)
 - 출석위원 과반수 →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
- 국외여행계획서의 홈페이지 공개(안 제6조제3항)
- 여행결과보고서 작성 제출(30일→15일 이내)(안 제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

- “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권고사항” 관련
 - ☞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(2009.3.11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개정규칙안 : 별첨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규칙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항중 “3분의 1” 을 “과반수” 로 한다.

제6조 제1항중 “출석위원 과반수” 를 “출석위원 3분의 2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중 “회의록을” 을 “회의록 및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” 로 한다.

제9조 제1항중 “30일” 을 “15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~② (생략) ③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<u>3분의 1</u> 이상이 되어야 한다. ④~⑧ (생략)</p>	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과반수</u> ----- ④~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회의)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<u>과반수</u>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<u>과반수</u>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<u>회의록</u>을 지체 없이 달성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 ----- -----, <u>출석위원 3분의 2 이상</u>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<u>회의록 및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</u>----- -----</p>
<p>제9조(여행보고서 제출)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<u>30일</u>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9조(여행보고서 제출) ① ----- -----<u>15일</u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【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

-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-

서 명 날 인 서

의원명	서명	날인
채명지	채명지	
방종영	방종영	